

EU 제11주

EU



❖ 유럽 통합운동의 태동

- 유럽의 역사는 분화와 대립의 역사.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는 제후, 왕 사이에 분쟁이 반복.
-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지식인 사이에 공통된 인식
 - “예전에 유럽은 세계를 지배하고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었으며 내부에서의 다툼을 없앨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유럽의 세계지배 체제는 붕괴되었다. 아시아가 각성하고 미국은 유럽국가들을 추월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으로 되어 유럽에서 분리되었다. 영국은 다른 대륙에 있는 식민지 경영으로 유럽대륙을 뛰어넘는 세계대국이 되었다. 유럽은 세계정치의 주체였지만 전후 유럽은 그 대상으로 되고 말았다. 유럽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제연맹 가맹국의 손에 넘겨주었다.”

■ 이러한 정세 속에서 유럽이 처한 3가지 위협

- 1) 유럽 제국간(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이 미해소에 따른 전쟁의 위협 가능성
- 2) 공산주의 러시아에 의한 유럽 침공 가능성
- 3) 미국 경제와의 경쟁에 밀려 유럽경제가 파멸될 가능성

■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럽통합

■ 그러나 넓은 식민지를 가진 영국이 참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먼저 대륙 제국간의 범 유럽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실현되지 못한 채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됨

■ 2차례 세계대전 후

■ 파괴된 유럽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초강국의 출현으로 인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지도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이들 사이에 끼어 좌지우지 당하는 처지에 놓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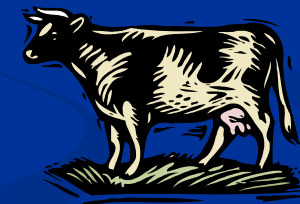
■ 전쟁 피해 극복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유럽이 직면한 절박한 과제로 부상

■ 또한 전쟁 재발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군수산업 특히 독일의 철강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 Winston Churchill 1946년 유럽합중국 설립을 제안, 그 첫 단계로 독일과 프랑스의 동반자 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역설. 이러한 처칠의 제안은 큰 반향을 일으킴.

전후 유럽 통합운동의 두 가지 흐름

1. 유럽내륙의 여러 나라의 입장으로 국가주권을 제한하더라도 서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 이들은 전후 폐허가 된 유럽은 유럽합중국으로 제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
2. 이에 반해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대륙에 비해 전쟁의 상처가 덜하였고, 특히 영국은 영연방 국가들과의 관계도 있어 통합에 거리를 두고 국가주권의 제한을 동반한 초국가적 국가기관의 출현을 경계하였다. 처칠도 유럽 통합을 주장하였으나, 영국 자신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후원자로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 Marshall Plan과 OEEC

- 미국이 1947년 Truman 독트린과 Marshall 선언을 통해 유럽의 경제적 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계획을 수립. 서유럽 국가들이 종래의 자국 우선적인 생각을 초월하여 처음으로 유럽 전체의 부흥을 위한 협력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미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1948년 Marshall Plan의 수용체계로서 정부간 기구인 OEEC(유럽경제협의기구)를 설립하면서부터.
- Marshall 미 국무장관은 유럽부흥의 주도권은 유럽국가들 자신이 쥐어야 하며 미국은 그 계획을 원조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 유럽통합의 초기 단계는 이와 같이 미국의 지도력 하에 시작됨.
- 그러나 프랑스 Jean Monnet 장관은 OEEC가 정부간 협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한계로 봄. 그는 전후의 유럽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보호주의를 내건 주권국가가 다시 탄생하는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럽의 평화가 위협받게 되고 다시 각 나라들이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대립하는 종전의 과오를 반복하게 된다고 생각.
- 따라서 개별국가를 초월한 단일 유럽 또는 유럽연방을 만드는 것이 유럽의 장래에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 그는 Shuman 선언을 기초하였고 ESCS의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Marshall Plan의 숨은 뜻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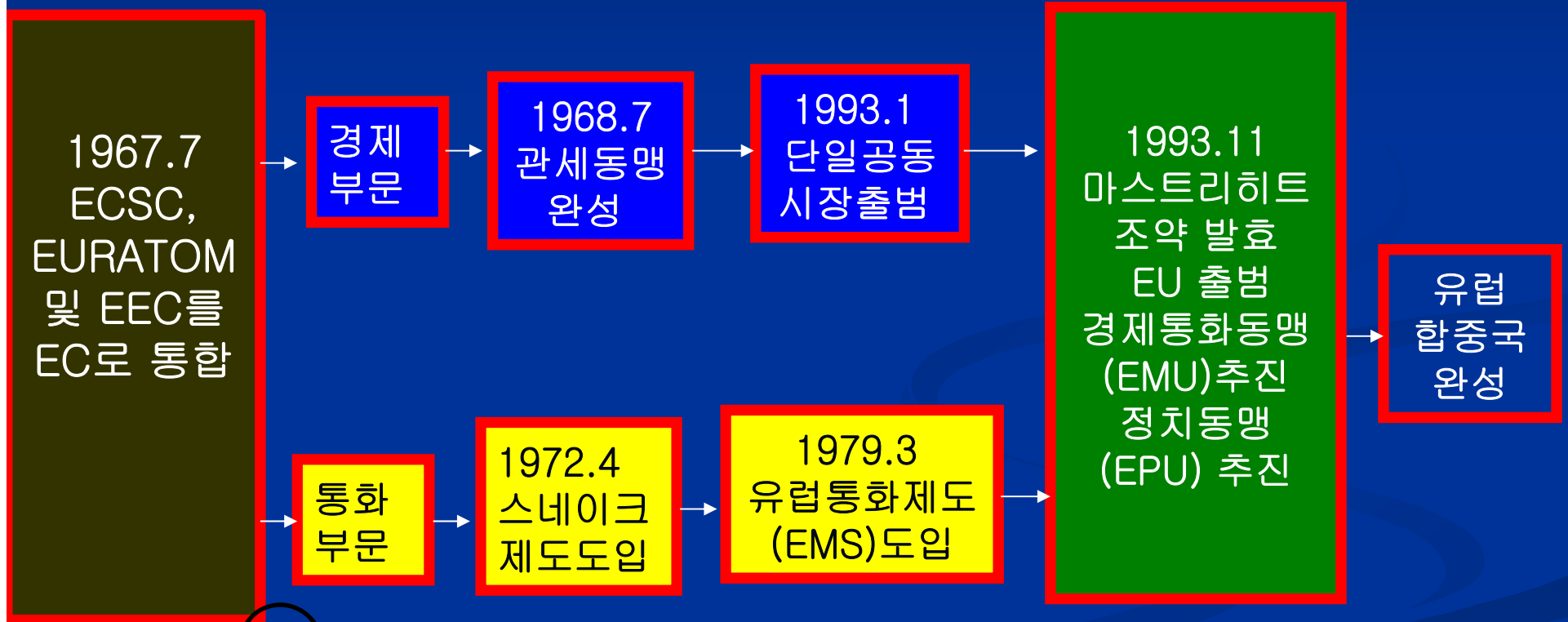
- 전후 동구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사회주의화되고 서유럽에서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공산당 연립정권이 수립되어 자본주의체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임. 미국은 이러한 사회주의의 물결을 막고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Truman Doctrine을 선언
- 이것은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도 불사한다는 내용.
- 또한 유럽의 부흥을 위해 Marshall Plan을 발표하였는데,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과잉생산 해소와 서유럽의 구 식민지로의 진출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음. 즉 미국의 경제적 지위 상승은 군수물자의 수출이었는데 종전 후 국내산업은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첫째, 미국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황을 막기 위해 미국 생산물 소비시장을 넓히고자 함. 실제로 유럽부흥계획은 유럽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부흥물자보다는 단순히 소비되는 구호물자에 중점. 즉 유럽의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을 높여 미국의 공급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

둘째, 전후 많은 서유럽의 식민지가 독립하였지만 아직宗主국과의 관계가 강하게 남아 있었음. 미국은 이에 주목하여 유럽부흥계획의 조건으로 서유럽의 식민지였던 나라에 대한 수출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

셋째, 유럽부흥계획은 사회주의 진영의 약화와 자본주의 진영의 강화를 꾀한 것으로서 서유럽과 북유럽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만 예산을 할당하였고 전쟁의 피해가 더 심했던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전혀 원조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는 유럽부흥계획의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정권으로부터 공산당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함.

단계별 유럽 통합과정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1. Schuman 선언

- 1950년 프랑스 Schuman 장관은 유럽경제의 통합구상을 발표. 이것은 초국가적인 최고집행기관을 만들고 프랑스와 독일의 중공업을 그 아래에 통합한다는 획기적인 내용, 즉 최고기관의 결정은 프랑스, 독일 및 기타 가맹국을 구속하여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
- Schuman Plan은 정치적 동기가 강했으나 경제적 요구이기도 했음. 당시 유럽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보수주의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로 인하여 무역, 외환 등의 자유화가 진전되지 못했고 경제발전이 지연되고 있었음.
- 경제통합은 이러한 폐쇄적인 경제를 개혁하는 묘수. Schuman은 처음부터 전 생산부문에 걸친 통합보다는 우선 개별적인 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 그리고 점차 통합범위를 확대 나아가 국경의 장벽을 없애고 자유로운 단일시장을 만들어 보수주의적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국과 소련에 필적할 만한 강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계획을 구상했던 것.

- Schuman 선언의 숨은 뜻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연합국은 독일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하여 독일경제에 대해 엄격한 관리정책을 취함. 프랑스는 보불전쟁 이래 세 차례를 전쟁을 통해 독일에게 국토를 유린당하고 경제발전에서도 독일에게 추월 당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경계심은 강했고, 독일경제의 발전을 감독하는 국제관리기구도 프랑스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설치됨. 프랑스는 독일경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제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고 나섬.

- 그 목적은 첫째는 독일 군국주의와 그 기초가 되는 군수산업의 부활을 억제 하면서 동시에 독일이 강력한 경쟁상대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둘째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석탄을 확보하는 것임.

- 그런데 동서진영 간에 냉전이 심화되자 미국과 영국은 서독을 공산진영에 대한 완충지로 만들려는 전략적 전환을 하여 서독의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 이르렀고, 프랑스도 그 전까지 취했던 전략을 전환하여 과거의 독일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성격의 Schuman 선언을 내놓게 된 것.

2. 독일과 기타 유럽 국가들의 반응

- 독일은 루르지역의 중공업에 대한 연합국의 국제관리에 강하게 반발하여 Schuman Plan의 제안 이전에 이미 독일의 중공업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의 중공업을 통합하여 국제관리 하에 두거나 다른 여러 나라도 가맹시켜 유럽의 중공업 전체를 국제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창하고 있었음.
- 당시 피 점령국으로서 연합국의 관리를 받고 있던 독일로서는 Schuman Plan이 실현되면 석탄, 철강에 관한 한 점령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가맹국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ECSC 설립은 독일에게는 환영할 만한 제안이었음.
- 프랑스와 독일 외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3국과 이탈리아도 ECSC 설립을 위한 협상에 참가하겠다고 발표.
- 석탄, 철강업이 우선적인 통합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① 군수산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② 국제적 관리 하에 두기 쉬운 성질을 가졌다는 점, ③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합에 성공을 거두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④ 역사적으로 이미 유럽 여러 나라 기업간의 결합이 긴밀화 되어가고 있는 부문이라는 점, ⑤ 경기변동으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기 쉬운 불안정한 성격을 가진 산업이라는 점 등의 이유가 있었음.

당시 석탄과 철강산업이 처한 상황

- 유럽 중공업의 중심은 루르, 자르, 로렌,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걸쳐있는 삼각지대의 석탄과 철강자원임.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4개국에 의해 분할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맺기가 어려웠고 자원을 둘러싼 각국의 영토분쟁에도 자주 휘말리게 되어 피해가 많았음.
- 1949-50년경, 서유럽의 석탄사정은 생산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약간 부족한 상태였으나 철강은 생산력 증대로 인하여 과잉생산이 조짐이 보였음.
- 유럽의 철강생산자들 사이에서는 전쟁 전의 카르텔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철강카르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Schuman Plan에 과잉생산과 투자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음

3. 파리조약

- ECSC 설립조약(파리조약)은 196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에 의해 조인되어 1962년 발효
- 설립목적은 조약 제2조에서 가맹국 간 석탄·철강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가맹국의 경제적 확대,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규정
- ECSC가 관할하는 범위는 석탄·철강 부문의 경제정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제3국과의 무역정책, 노동력이나 자본의 자유이동 등의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개별 가맹국이 보유하고 있었음
- 그러나 석탄·철강산업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건도 서로 조정하여 가능한 한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함

제3절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1. 로마조약

- ECSC의 출범에 이어 안보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한국전쟁을 촉발시킨 동서냉전체제의 심화로 인하여 유럽 안보에 불안을 느낀 미국은 독일의 재무장과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통합군이 창설을 추진하였고, 독일의 재무장에 반대해 오던 프랑스가 ECSC와 유사한 형태의 군사적 통합계획을 제안하게 됨
- 이에 따라 1952년 ECSC 6개국은 유럽방위공동체(EDC)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스탈린의 사망과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프랑스 의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EDC는 좌절
- 이후 1954년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의 군사협력을 위하여 1948년의 브뤼셀 조약을 수정·강화하는 파리협정(Western European Union, 서유럽동맹)을 체결
- 브뤼셀 조약은 1948년 베네룩스 3국, 프랑스, 영국 사이에 체결된 경제, 사회, 문화협력 및 집단방위에 관한 조약이었음.

- 파리협정은 서독의 주권회복 및 NATO군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재군비를 승인한 것.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상황의 안정과 ECSC의 순조로운 발전에 힘입어 ECSC 6개국은 정치적 통합보다 전반적인 경제통합의 진전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 1955년 보다 강화된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느낀 ECSC 가맹국들은 이탈리아 Messina에서 모여 베네룩스 3국이 강력하게 제안한 공동 시장 확대 문제를 심의하고 경제공동체와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의 기본방침을 채택. 이 Messina 결의에 기초하여 1955년 정부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시장의 창설과 관세동맹의 설립문제에 대해서 검토. 그 결과로서 동 위원회는 Speak 보고서라 불리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고 1956년 6개국에 의해 채택.
- 이 Speak 보고서를 기초로 브뤼셀에서 각국 대표들의 외교협상을 거쳐 1957년 로마에서 EEC 설립조약이 체결. EEC 설립조약은 프랑스가 EEC 비준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Euratom은 별도의 조약으로 설립되었으며, 같은 날 로마에서 서명됨.
- Euratom 설립조약은 1958년 발효

제4절 유럽공동체(EC)의 발전



- EEC와 Euratom 두 공동체도 ECSC와 마찬가지로 각각 총회, 이사회, 위원회, 법원의 4개 기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로마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유럽 제 공동체에 공통된 기관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ertain Institute to the European Community)”에 의해 세 공동체는 단일한 총회와 법원을 갖게 되었다.
- 또한 1967년부터는 “유럽 제 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위원회를 설립하는 조약(Treaty Establishing a Single Council and a Singl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Merger Treaty라고도 함)”에 의해 이사회와 위원회도 세 공동체에 공통된 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관의 통합 후 3개 공동체를 총칭하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라고 한다. 그러나 기관이 합병되었다고 하여 공동체 그 자체가 통합된 것은 아니며, 세 공동체는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기관도 각 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각 공동체의 기관으로서 임무와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2. 가맹국의 확대

가.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가입

- 영국은 파리조약과 로마조약의 체결 시에 가입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 오히려 EFTA를 결성하여 EC와 경쟁. 그런데 EC의 경제통합이 성공을 거두는 데 비하여 EFTA의 느슨한 협력체제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태도를 바꾸어 EC에의 가입을 희망하게 됨
- 영국은 1961년 EC 가입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프랑스의 계속되는 반대로 결렬되다가 1972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3국의 가입조약이 체결. 원래 노르웨이도 서명하였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가입하지 못함

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

- 그리스는 1975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77년에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다른 국가와는 다른 문제가 있었음. 경제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고 이들 나라의 산업이 농업, 철강, 섬유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기존의 공동체 산업과 경쟁이 심한 부문이었음. 게다가 실업률이 높아서 이들 국가의 가입은 EC경제에 부담
- 따라서 이들에게는 상당한 과도기와 예외적 적용을 허용하고 동시에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했음.
- 가입교섭에는 장기간이 소요. 그리스는 1981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86년 가입

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의 가입

- 1995년부터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어 가맹국 수는 15개국. 원래 노르웨이도 가입할 예정이었으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가입이 또다시 부결되어 가입하지 못함

■ 3. 단일 유럽 의정서

- 가맹국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사회를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바꾸는 문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 유럽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
- 1983년 Stuttgart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EC의 제도개혁 교섭 개시 선언이 채택. 결국 1995년 Luxembourg 이사회에서 단일유럽의정서(SEA)로 구체화됨. 개정된 EC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실제적 개정으로서 역내 단일시장을 1992년 말까지 완성하기로 함, 특히 가맹국 간 무역에 대한 기술적, 법적, 재정적 장벽을 그 때까지 모두 제거하기로 약속. 또 환경보호, 작업상 안전 및 건강, 기술개발 및 연구, 지역개발 분야의 입법행위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 그리고 경제통화연맹(EMU)의 창설을 예고

둘째, 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정이 있었음. 전원 일치를 요하던 많은 입법사항이 가중다수결로 변경, 정부간 기관인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이 확대

- EC 위원회는 1985년 역내단일시장의 완성을 목표로 역내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단일유럽의정서에서 가중다수결 제도의 도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1992년 말까지가 시한인 역내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법적, 정치적 조직들을 취하기가 용이해져 EC의 경제적 통합들이 촉진.

유럽연합(EU)의 성립

Maastricht 조약

- 단일유럽의정서에 의하여 1993년 EC는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됨.
- 1989년부터 동구권 변혁 본격화, 독일 통일, 1991년 소련 붕괴로 냉전시대 종결. 특히 독일의 통일은 다른 가맹국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함. 이러한 상황에서 Jacques Delors EC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유럽통합을 더욱 가속화하려고 통화연합과 정치연합에 주력
- 그리하여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 하에 1990년부터 유럽이사회 정상회의에서 통화연합과 정치연합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룸.
- 독일은 통화연합과 정치연합 모두 적극적이었고 프랑스는 통화연합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정치연합에는 미온적이었던 반면, 영국은 모두 반대 입장이었으나 대처 수상이 메이저 수상으로 바뀌면서 영국의 반대도 누그러짐.
- 결국 1991년 Maastricht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을 결성하는 Maastricht 조약(유럽연합조약, TEU)에 합의하고 1992년 정식으로 체결.

EU의 법적 성격

가. EU의 법인격

- EC설립조약에는 EC가 법인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Masstricht조약은 EU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국제사법법원의 1949년 권고의견은 국제기관이 법인격을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 그 기관의 가맹국으로부터 자립성을 들고 있음. 그러나 EU의 경우에는 EU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에 있어서 가맹국이 권한을 가진 경우가 있음.
- Masstricht 조약 제16조에서도 EU를 외교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통합기구가 아니라 가맹국인 것을 보여주고 있음. 즉 EU는 가맹국으로부터 자립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또한 EU는 여러 제도의 집합체로서 단일 의사결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EU는 국제법상의 법인격이 없다고 해석됨.

■ 나. 연방적 성격

- 통화연합, 연합시민권, 공동외교·안보정책, 사법·내무분야의 협력 등은 EU가 연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있는 지표들. 그러나 이러한 측면도 실제로는 연방제도와는 매우 다른 구조로 되어 있음
- 먼저 연합시민권 ; EC설립조약에 정의되어 있는 연합시민권의 내용을 요약하면 “ EC 가맹국의 국적보유자는 동시에 유럽연합의 시민으로 가맹국 영토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도 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유럽의회 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또한 자국의 외교대표부가 없는 제국에서 다른 EC 가맹국의 외교대표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EC설립조약상 연합시민권은 연방의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EU의 영토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EU의 시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및 외교적 보호를 부여하도록 한 조약은 그 자체로서 각 가맹국의 국적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EU 자체의 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도 그 목적은 EU 가맹국 간에 외교정책에 있어서 협력 및 가맹국이 중요한 공동의 이익을 가진 분야에 있어서 공동행동을 취하는 것임.
-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에 있어서 외교협력과 비교하면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공동행동제도가 도입되는 등 통합과정이 진정되었으나, 외교·안보정책은 본질적으로 가맹국의 권한이지 통합기구에 부여된 권한은 아니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는 것이 전원 일치제의 원칙에서 여실히 나타남

다. 유럽연합(EU)과 유럽공동체(EC)

- 유럽연합(EU), 유럽공동체(EC), 공동시장(CM), 역내시장(IM) 등의 용어가 구별 없이 혼용되어 개념상 혼동을 초래
- 유럽연합(EU)는 Maastricht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유럽의 여러 국민들 간에 좀더 긴밀한 연합을 창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단계에 불과
-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라는 표현은 1952년 설립된 ECSCm 1958년에 설립된 EEC, Euratom 세 개의 공동체를 총칭
- 단수형인 European Community라고 할 때에는 통상 EEC를 의미
Maastricht 조약은 ECSC, Euratom, EEC 등 세 개의 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여 각각의 공동체에 새로운 차원의 활동영역을 부여하는 한편,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과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EU가 EC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Maastricht 조약에 의해서 EC가 EU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오도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잘못. EC가 EU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EC는 EU를 구성하는 요소로 계속 존속
-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란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체의 주요한 목적 즉, 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RHK 공동체가 수행하는 역내 통상정책, 농업정책, 경쟁정책, 환경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의미.
-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은 공동시장의 일부로서 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국경 없는 단일시장을 의미

- 또 하나의 중요한 연방적인 측면은 통화연합. 그러나 연합은 통상 통화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일반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지만 EU의 경우에는 가맹국 경제정책의 협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Maastricht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내무분야의 협력도 EU를 연방제에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EU의 역외경계라는 개념이 제도화되고 출입국관리가 EU 가맹국의 공통의 이익에 관한 협력분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 분야의 협력은 정부간 협력으로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것은 가맹국임. 또한 유럽법원의 심사대상도 아님.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연방제도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는 연방과 다른 특수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지금까지 유럽공동체라고 불리던 3개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유럽공동체에는 없었던 공동외교·안보정책이나 사법·내무분야에서의 정부간 협력을 포함한 또 하나의 국가연합체라고 할 수 있음.
- EU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표현은 Maastricht 조약 전문에서 볼 수 있음. “EU 가맹국들은 EC 설립을 기초로 시작된 유럽통합의 과정에 새로운 단계를 구축하는 것을 결의하고... 동 조약에 합의하였다.”라고 하여 EU를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명백히 함

■ 경제협력체의 발전 과정

- 국가 간의 신뢰축적과 경제적 의존관계의 심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첫째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초기의 경제통합 단계에 해당. 역내국 간에 공동관세가 부과되나 역외국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독자적인 관세정책과 무역제한 조치가 취해짐(FTA)
- 둘째 관세동맹(Customs Union) 역내국 간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역외국들에게는 공동관세를 부과(EEC)
- 셋째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역외국들에게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역내국 간에는 생산물 뿐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EC)
- 넷째는 경제통합(Economic Union) 역내국 간에 생산품과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고 상호 협조 하에 각국의 경제정책을 조정하거나 공동경제정책을 수립(EU)
- 다섯째는 완전한 경제연합(Complete Economic Union) 가맹국들이 초국가적인 기구를 결성하여 경제·재정 및 통화정책을 조정·통합 및 관리하는 하나의 단일체적 경제 질서를 형성(EMU)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 영국은 연방제일주의를 버리지 않고 미국과 소련 양대 초강대국간의 중개역을 자임하였기 때문에 유럽통합에는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EEC가 설립되자 영국은 1957년 나머지 OEEC 가맹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제안.
- 1960년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7개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을 결성.
- EFTA는 가맹국의 재정경제정책의 조정은 가맹국의 자율에 일임하고 초국가적인 기관을 수반하지 않는 등 국가간 연합을 바탕으로 함.
- 즉, 회원국이 주권을 보유한 채 공업제품의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대외적인 관세는 각 회원국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국제기구.
- 이로써 서유럽에는 "EEC"와 "EFTA"라는 2개의 경제블록으로 분열. EEC와 EFTA는 경쟁관계가 아닌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다 후일 1992년 유럽경제지역(EEA)을 형성하게 됨.
- EEA는 공동대외통상정책은 갖지 않고 역내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음(EC의 관세동맹과는 다름). 그러나 1994년 EFTA의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3개국이 EU에 가입함으로써 그 의의가 크게 퇴색하게 됨.